## 민사조정법

[시행 2020. 3. 5.] [법률 제16910호, 2020. 2. 4., 일부개정]

법무부 (법무심의관실) 02-2110-3164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민사(民事)에 관한 분쟁을 조정(調停) 절차에 따라 당사자의 자주적・자율적 분쟁 해결 노력을 존중하면서 적정・공정・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2조(조정사건)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**제3조(관할법원)** ①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지원(地方法院支院), 시법원(市法院) 또는 군법원(郡法院)(이하 "시・군법원"이라 한다)이 관할한다.
  - 1. 피신청인에 대한 「민사소송법」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 소재지
  - 2.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
  - 3. 피신청인의 근무지
  - 4.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
  - 5. 손해 발생지
  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(專屬管轄法院)이나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정한 법원에서 관할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4조(이송) ① 고등법원장,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의 지정을 받아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판사 또는 조정사건을 담당하는 시・군법원의 판사(이하 "조정담당판사"라 한다)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(決定)으로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. 다만, 피신청인이 관할위반에 대하여 항변(抗辯)을 하지 아니하고 조정절차에서 진술하거나,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- ②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는 경우라도 이송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그 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**제5조(신청 방식)** ① 조정의 신청은 서면(書面)이나 구술(口述)로 할 수 있다.

- ② 구술로 신청할 때에는 법원서기관, 법원사무관,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(이하 "법원사무관등"이라 한다)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.
- ③ 제2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신청조서(調停申請調書)를 작성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.
- ④ 조정신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5조의2(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) ①「민사소송법」제469조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적법한 이의신청을 하여 같은 법 제473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을 발령한 법원이 인지의 보정을 명한 경우 채권자는 인지를 보정하는 대신 해당기간 이내에 조정으로의 이행을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이행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(卽時抗告)를 할 수 있다.
  - ③ 채권자가 제1항에 따라 적법한 이행신청을 한 경우에는 「민사소송법」제47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이의신청된 청구목적의 값에 관하여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본다.

## [본조신설 2012. 1. 17.]

- 제5조의3(독촉절차의 조정으로의 이행에 따른 처리) ①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조정이 신청된 것으로 보는 경우, 지급 명령을 발령한 법원은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,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에 따라 내야 할 수수료 에서 지급명령 신청 시에 붙인 인지액을 뺀 액수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  - ②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수수료를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법원은 결정으로 지급명령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.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가 보정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조정사건에 관한 기록을 제3조에 따른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.
  - ④ 제5조의2의 경우 독촉절차의 비용은 조정절차의 비용의 일부로 한다.

[본조신설 2012. 1. 17.]

**제6조(조정 회부)** 수소법원(受訴法院)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(抗訴審)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(係屬)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(回附)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7조(조정기관) ① 조정사건은 조정담당판사가 처리한다.

- ② 조정담당판사는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, 상임(常任)으로 이 법에 따른 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정위원(이하 "상임 조정위원"이라 한다) 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여야 한다.
- ③ 제6조에 따라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으로서 수소법원이 스스로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한 사건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본문 및 제3항에 따라 조정을 하는 상임 조정위원과 수소법원은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- ⑤ 제3항의 경우에 수소법원은 수명법관(受命法官)이나 수탁판사(受託判事)로 하여금 조정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는 조정담당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- ⑥ 조정담당판사가 제2항에 따라 스스로 조정을 하거나 조정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을 하게 하는 경우 조정담당판사나 조정장(調停長)은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분쟁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합의안을 도출하거나 그 밖에 조정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신설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**제8조(조정위원회)** 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명과 조정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 2. 4.> 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9조(조정장)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.

- 1. 제7조제2항의 경우: 조정담당판사 또는 상임 조정위원
- 2. 제7조제3항의 경우: 수소법원의 재판장
- 3. 제7조제5항의 경우: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
- 4. 시・군법원의 경우: 시・군법원의 판사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**제10조(조정위원)** ① 조정위원은 고등법원장, 지방법원장 또는 지방법원지원장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미리 위촉한다. 다만, 상임 조정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경력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위촉한다.
  - ② 조정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기를 2년 이내로 정하여 조정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③ 제1항에 따른 조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20. 2. 4.>
- 1. 조정에 관여하는 일
- 2.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의 촉탁(囑託)을 받아 제7조제6항에서 정한 사무를 수행하는 일
- ④ 법원은 조정위원에게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.<신설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10조의2(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)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사람 또는 제10조제1항의 조정위원 중에서 사건마다 조정장이 지정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11조(조정절차) ① 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조정장이 지휘한다. <개정 2020. 2. 4.>
  - ②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, 사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.<신설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12조(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) 조정위원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,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·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**제13조(수수료 납부의 심사)** ①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이 제5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낼 것을 명하여야 한다.
  - ② 신청인이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조정담당판사는 명령으로 신청서를 각하(却下)하여야 한다.
  -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<개정 2012. 1. 17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**제14조(조정신청서 등의 송달)** 조정신청서나 조정신청조서는 지체 없이 피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14조의2(사건의 분리·병합) 제7조에 따른 조정기관은 조정사건의 분리 또는 병합을 명하거나 이를 취소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 3. 31.]
- 제15조(조정기일) ① 조정기일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조정기일의 통지는 소환장을 송달하는 방법이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.
  - ③ 양쪽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청일을 조정기일로 한다. [전문개정 2010. 3. 31.]
- **제16조(이해관계인의 참가)** ①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에 참가할 수 있다.
  - ②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의 결과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정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 3. 31.]
- **제17조(피신청인의 경정)** ①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잘못 지정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신청인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피신청인의 경정(更正)을 허가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새로운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한 것으로 본다.
  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 종전의 피신청인에 대한 조정신청은 제1항의 경정신청이 있은 때에 취하(取下)된 것으로 본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④ 제6조에 따라 제1심 수소법원이 조정에 회부한 사건에 대하여「민사소송법」제260조에 따른 피고의 경정을 한경우에는 소송절차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**제18조(대표당사자)** ①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(多數)의 당사자는 그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선임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.
  - ③ 조정담당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명할 수 있다.
  - ④ 대표당사자는 자신을 선임한 다른 당사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외하고는 각자 조정절차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.
  - 1. 조정조항안(調停條項案)의 수락
  - 2. 조정신청의 취하
  - 3.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에 관계되는 행위
  - 4. 대리인의 선임
  - 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경우에는 대표당사자 외의 나머지 당사자에게는 조정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[전문개정 2010. 3. 31.]
- 제19조(조정 장소)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의 내용, 당사자의 의사와 편의 등을 고려하여 법원 외의 적당한 장소에서 조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4.>
  - ② 제7조제6항에 따른 조정위원이 법원 외의 장소에서 조정사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신설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**제20조(비공개)** 조정절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다만, 조정절차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조정담당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21조(조정 전의 처분) ①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상대방과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게 조정 전의 처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.
  - 1. 현상(現狀)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
  - 2. 그 밖에 조정의 내용이 되는 사항의 실현(實現)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배제(排除)
  -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42조에 규정된 처분 위반에 대한 제재(制裁)를 고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제1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  - ④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22조(진술청취와 사실조사) 조정담당판사는 조정에 관하여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적당한 방법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[제목개정 2020. 2. 4.]

**제23조(진술의 원용 제한)** 조정절차에서의 의견과 진술은 민사소송(해당 조정에 대한 준재심은 제외한다)에서 원용(援用)하지 못한다. <개정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**제24조(조서의 작성)** 조정절차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조정에 관하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 다만, 조정담당판사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**제25조(조정신청의 각하)** ①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결정으로 조정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26조(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) ①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이 그 성질상 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당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조정신청을 한 것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의 신청을 하지 못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27조(조정의 불성립) 조정담당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.
  - 1.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
  - 2.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28조(조정의 성립)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29조(조정의 효력)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30조(조정을 갈음하는 결정)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4.> [전문개정 2010. 3. 31.]
- 제31조(신청인의 불출석) ① 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의 새로운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신청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본다. [전문개정 2010. 3. 31.]
- 제32조(피신청인의 불출석)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30조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33조(조정에 관한 조서의 송달 등) ①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.
  - 1.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을 때
  - 2.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
  - 3.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을 때
  -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른 조서 중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기재한 조서는 그 등본을,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기재한 조서 또는 제28조에 따른 조서는 그 정본(正本)을 당사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.

## 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**제34조(이의신청)**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 다만,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  -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  -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(審級)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. 이 경우「민사소송법」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, "소"(訴)는 "이의신청"으로 본다.
  -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.
  - 1.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
  - 2.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
  - 3.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
  -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35조(소멸시효의 중단)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.
  - ②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조정사건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.
  - 1. 조정신청이 취하된 때
  - 2.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보는 때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36조(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.
  - 1.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
  - 2.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
  - 3.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
  -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(訴狀)에 붙여야 할 인지액(印紙額)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(補正)하여야 한다. [전문개정 2010. 3. 31.]
- **제37조(절차비용)** ① 조정절차의 비용은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,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.
  - ② 조정신청이 제36조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(移行)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비용은 소송비용의 일부로 본다. [전문개정 2010. 3. 31.]
- 제38조(「민사소송법」의 준용) ① 조정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제51조, 제52조, 제55조부터 제60조까지(제58조제1항 후단은 제외한다), 제62조, 제62조의2, 제63조제1항, 제64조, 제145조, 제152조제2항ㆍ제3항 및 제163조를 준용한다. <개정 2016. 2. 3., 2020. 2. 4.>
  - ② 이 법에 따른 기일, 기간 및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「민사소송법」을 준용한다. 다만, 「민사소송법」제185조제 2항, 제187조,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의 규정은 제28조에 따라 작성된 조서를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용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39조(「비송사건절차법」의 준용) 조정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비송사건절차법」 제1편(제15조는 제외한다)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제40조(조정위원회 및 조정장의 권한)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하는 경우 조정위원회와 조정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을 가진다. <개정 2020. 2. 4.>
  - 1. 조정위원회: 제16조, 제17조제1항, 제18조제3항, 제19조제1항, 제21조제1항, 제22조, 제25조제1항, 제26조제1항, 제27조, 제30조 및 제3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
  - 2. 조정장: 제13조제1항 제2항, 제20조, 제24조, 제34조제2항 및 제42조에 규정된 조정담당판사의 권한 [전문개정 2010. 3. 31.]
- 제40조의2(상임 조정위원의 공무원 의제) 상임 조정위원은 「형법」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
[본조신설 2009. 2. 6.]

- **제41조(벌칙)** ①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의견별 조정위원의 수(數)를 누설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② 조정위원 또는 조정위원이었던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 - ③ 제2항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(公訴)를 제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- **제42조(조정 전의 처분 위반자에 대한 제재)** ① 조정담당판사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 제21조에 따른 조정 전의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개정 2020. 2. 4.>
  - ②「비송사건절차법」제248조 및 제250조 중 검사(檢事)에 관한 규정은 제1항의 과태료 재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제43조(위임규정)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서의 의견청취, 사실조사, 절차비용의 예납(豫納), 독촉절차와 의 관계, 소송절차와의 관계, 집행절차와의 관계,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. <개정

2012. 1. 17., 2020. 2. 4.>

[전문개정 2010. 3. 31.]

부칙 <제16910호,2020. 2. 4.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 다만, 제19조제2항, 제22조 및 제4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조정에 회부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